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42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이강일·양부남·장철민

채현일 · 김병기 · 김남근

김주영 · 허성무 · 한정애

이성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징수한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9조제7항, 제429조의2제5항, 제429조의3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금융투자 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금융투자피해 보상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된다.

제429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에 귀속된다.

제429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에 귀속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제5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
	금은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
	른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된다.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① ~ ④ (생	대한 과징금) ① ~ ④ (현행과
략)	같음)
<u><신 설></u>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
	수한 과징금은 금융투자피해보
	<u>상기금에 귀속된다.</u>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
한 과징금) ① ~ ③ (생 략)	한 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u>
	수한 과징금은 금융투자피해보
	<u>상기금에 귀속된다.</u>